

2019년 7월부터 해충 방제 활동의 효율화 · 전문화를 위해



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가 신설됩니다.

● '19년 7월 1일부터 축산농가 해충 방제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업종인 “가축방역위생관리업”이 신설됩니다.

● 일정규모 이상 산란계 농가와 살충제 사용 위반 산란계 농가 등은 전문 업체를 통해 해충 방제를 실시토록 의무화됩니다.



-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(살충제) : 부적합 통보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 및 방제('19.7.1일부터 적용)
- 일정 규모 이상 농가 : 매년 1회 이상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 및 방제
 - 산란계 10만수 이상 사육농가는 '21년부터 적용
 - 5만 이상 10만 미만 사육농가는 '23년부터 적용

●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주요 내용 (근거:가축전염병예방법, '18.12.31. 개정 · 공포)



구 분	주 요 내 용
■ 영업의 정의 (제2조 제8호 신설)	·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
■ 영업신고 (제5조의3 신설)	· 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· 장비 · 인력을 갖추어 시 · 군 · 구에 신고 · 신고사항의 변경, 휴 · 폐업, 재개업의 경우도 신고
■ 방제기준 (제5조의3 신설)	·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 · 방법에 따라 소독 · 방제 실시
■ 기록보존 (제5조의3 신설)	· 소독 · 방제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·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 · 보존
■ 행정처분 (제5조의3 신설)	· 방역위생관리업자가 규정 위반시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(6개월 이내) 명령 * 변경신고 및 휴업 · 폐업 · 재개업 신고 의무 위반, 시설 · 장비 · 인력 기준 위반, 소독 · 방제 기준 위반 등
■ 영업자 교육 (제5조의4 신설) (시행규칙 제7조의11 신설)	· 방역위생관리업자, 소독 · 방제업무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(교육기관, 교육과정)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 이수 · 신고 · 업무종사 후 6개월 이내 신규교육, 이후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 ※ 교육기관 :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(교육문의: 044-550-5599)
■ 방역위생관리업의 의무적 이용 (제17조제2항 개정) (부칙 제1조, 제2조)	· 다음 각 호의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 · 방제 실시 1.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('21.1.1. 시행) 2.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('19.7.1. 시행) 3. 그 밖에 전문적인 소독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자('21.1.1. 시행)
■ 벌칙 (제58조 개정)	· 미신고 영업 행위(300만원 이하의 벌금형)
■ 과태료 (제60조 개정)	· 교육 미이수(500만원 이하 과태료) ·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· 방제 의무 위반(300만원 이하 과태료)



농림축산식품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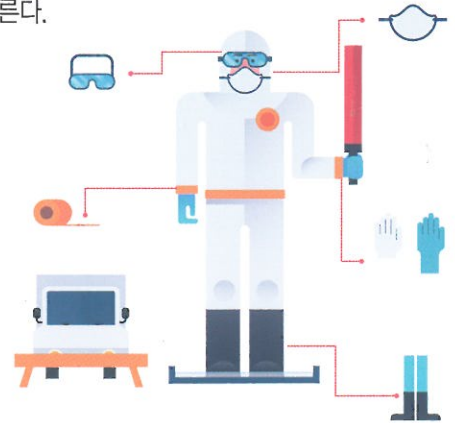
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시설·인력·장비 기준

1. 시설 :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,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.

- 가.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.
- 나.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.

2. 장비

- 가. 동력분무기 1대 이상
- 나. 고압세척기 2대 이상
- 다. 분말살포기(입자 및 분무) 2대 이상
- 라. 수동식 분무기 2대 이상
- 마.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
- 바. 보호용 의복(상·하) 5벌 이상
- 사. 진공청소기, 세척용 노즐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·기구
- 아. 장비와 인력의 출장 시공 업무가 가능한 차량 1대 이상(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된 차량)



4. 인력: 대표자 외에 업무 종사자 1명 이상

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소독·방제 기준

가. 물리적·환경적 방법

- 1)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.
- 2) 질병매개곤충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처리나 열풍 등의 방제법을 사용한다.
- 3)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.

나. 화학적 방법

- 1)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, 살충제 또는 기피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.
- 2) 친환경인증농가는 유기합성 성분이 들어있는 살충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.

다. 생물학적 방법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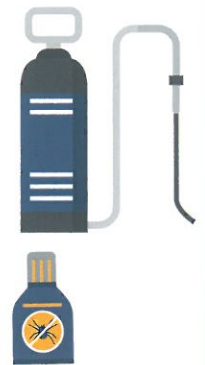
- 1)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천적을 이용한다.
- 2)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.

라. 물리적·환경적,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제 중 해당 시설에 적합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야하며, 사전에 고압세척·물세척 등의 방법으로 축사의 먼지와 유기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.

마. 쥐의 방제

- 1)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.
- 2) 쓰레기 더미, 퇴비장, 풀이 우거진 담장 등의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.
- 3) 건물의 출입문, 환기통, 배관, 외벽,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서처리(防鼠處理)를 해야 한다.
- 4) 살서제(殺鼠劑)를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.

바. 해충 방제와 구서 등에 사용하는 약품은 「약사법」 제2조제7호다목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(농림축산식품부령)의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등 및 동물용의약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(신고)를 받은 제품을 용법·용량 및 주의사항 등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.



가축방역위생관리업 관련 교육과정

구 분	주 요 내 용	교육시간
신규교육	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및 방역정책, 축산농가 방역과 위생업무 절차, 미생물과 소독방법, 진드기·해충·쥐의 생태와 방제방법,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, 환경보호, 위험물 취급 및 사용자 안전, 축산업 기본 소양	16시간
보수교육	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및 방역정책,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, 방제실무 및 안전관리, 축산업 기본 소양	8시간